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90

발의연월일: 2025. 4. 24.

발 의 자:김민석 • 윤준병 • 윤종군

서삼석・김 현・이원택

김남근 • 박지원 • 김기표

이재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 위기상황 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 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법률 제 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에 포함할 수있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의료서비스 지원"을 "의료서비스 또는 의료비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	
(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	
다)으로 한다. <단서 신설>	다만, 제2조제2
	호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하
	여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
	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
	<u>내인 사람을 긴급지원대상자에</u>
	포함할 수 있다.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①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1
직접지원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나
치료 등 <u>의료서비스 지원</u>	<u>의료서비스 또는</u>
	의료비 지원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